



저압케이블 지중매설

관련조항 : 판단기준 제11조, 제136조

Q

○ 380V 3상4선식 200mm²를 200mm 정도 지중으로 배선관에 매설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케이블 부족으로 접속을 해야 하는데, 혹시 접속하는 부분에 규정에 의한 연결방법 및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A

1. 저압 지중전선로의 지중함 시설은 판단기준 제13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중 직접 매설식은 판단기준 제136조 제4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단기준 제136조(지중 전선로의 시설) 제4항 제1호 및 제2호

④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는 60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러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러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을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 위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콤파인덱트 케이블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지중 전선로에서 케이블 접속은 판단기준 제11조(전선의 접속법) 및 내선규정 2150-4(지중전선 접속)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중에서 케이블 접속 시 접속 불량으로 인하여 습기 및 물이 침투할 경우 단락 및 지락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지중 케이블을 중간에서 접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타 저압 지중전선로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판단기준 제136조~제142조 또는 내선규정 제2150절(지중전선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